



제1755호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2 7 7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조치(개선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자 동 차 관 리 과 2
공고
- 공 고 제 3 9 9 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4
- 공 고 제 4 0 2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자 동 차 관 리 과 6
공고
- 공 고 제 4 0 8 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체 육 진 흥 과 8

고 시

- 고 시 제 2 2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54
- 고 시 제 2 3 호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총 무 과 56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3 - 27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조치(개선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장치 등) 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17.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12명 (별첨)
2. 공 고 기 간 : 2023. 2. 17. ~ 2023. 3. 6.
3. 공시송달 내용

상기와 같이 귀하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개선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공고기간 경과 후 개선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절차로 진행됩니다.
5.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시정조치(개선명령) 통지서 1월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인천연수다7075	김*용	2023.01.13 폐문부재	번호판 오염	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번길 **-*, ***호(간석동, 포**)
2	22어5432	김*배	2023.01.13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 (자전거캐리어)	216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 ***동 ***호 (서창동, 서**아파트)
3	인천미추홀하4738	이*룡	2023.01.13 폐문부재	번호판 훼손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 ****호(구월동, 노***차)
4	인천미추홀하5614	최*규	2023.01.17 폐문부재	봉인탈락	215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번길 **, ***호(구월동)
5	인천연수다7265	김*일	2023.01.17 폐문부재	미인증 LED 설치	21662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 ****동 ***호(논현동, **/아파트)
6	48마6920	안*영	2023.01.17 폐문부재	미인증 등화 설치	2154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춘로 ***-**, *층 ***호(만수동)
7	50마8472	최*진	2023.01.31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 (스티커)	216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동 ****호(논현동, 예**아파트)
8	인천남동타8615	최*석	2023.01.31 폐문부재	번호판 오염, 미인증 LED 설치	215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동 ****호(만수동, 포**)
9	94노0730	주식회사 이**뉴	2023.01.31 폐문부재	번호판 오염	215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춘공원로 *, *동 ***호(구월동, 구**밸리)
10	24노5915	양*선	2023.01.31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 (스티커)	216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 ***동 ****호(논현동, 예**아파트)
11	62서4450	한*규	2023.01.31 폐문부재	리플렉터 LED 설치	215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동 ***호(만수동, **다세대주택)
12	65우3706	김*하	2023.01.31 폐문부재	숨쉬기모듈 설치	21538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번길 **, ***호(만수동, 해**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39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 2. 17.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309러8457 외 7건 (과태료 부과 송달불능자)
※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내역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열람가능 함.
3. 공고기간: 2023. 2. 17. ~ 2023. 3. 6. 까지
4. 공고내용
 - 가. 납부장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 나.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다. 이의신청: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제1항)
 - 라.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익월까지 가산금3%, 그 후 증가산금 매월1.2%)됨
 - 체납처분: 부동산 등의 압류 후 체납 처분됨
5. 문 의 처: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4)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차량번호	납부자명	주소	내용	반송일	과태료
1	309러8457	최*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번길 **, ***호(만수동, **다세대주택)	번호판 미부착 운행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12.23	500,000
2	인천남동타4678	지*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길 **, *동 ***호(구월동, **타운*차)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12.23	30,000
3	경기고양하3967	김*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 ****호(구월동, **타워)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12.23	30,000
4	인천남동타8500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 *동 ***호(간석동, 해**)	번호판 가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12.23	500,000
5	인천부평사3899	조*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번길 **, *동 ***호(만수동, **다세대주택)	번호판 가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12.23	500,000
6	인천부평아5178	이*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만수동, **아파트)	봉인탈락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2022.12.23	100,000
7	인천남동타4519	한*엽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 ***호(간석동)	봉인탈락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12.23	103,000
8	인천남동파3527	박*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번길 ***-, 나동 ***호(구월동, **아파트)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22.12.23	30,90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402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2. 17.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대 상 : 23다7728 외 7건 (첨부파일 참조)
2. 공 고 기 간 : 2023. 2. 17. ~ 3. 6.
3. 공시송달 내용
 -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23년 2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23다7728	황*길	2023.02.17	폐문부재	리플렉터 LED 설치 재적발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 *동 ***호(간석동, **아파트)
2	175구3711	유*찬	2023.02.17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식별불가)	2166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 ***동 ***호(논현동, 논**뷰)
3	84부0528	강*찬	2023.02.17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식별불가)	2165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 ***호(논현동)
4	39오3690	이*순	2023.02.17	수취인불명	번호판 가림(식별불가)	2156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호(구월동, 제***차)
5	83마3752	박*영	2023.02.17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식별불가)	215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번길 **, *동 ***호(간석동, **빌라)
6	337마4087	정*원	2023.02.17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식별불가)	2156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구월동, 롯**드)
7	경기김포파2403	임*은	2023.02.17	폐문부재	번호판 가림(식별불가)	215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 ***동 ****호(만수동, **아파트)
8	26라3524	송*훈	2023.02.17	폐문부재	번호판 미부착 운행	21535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개동로**번길 *, ***호(만수동)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408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2. 20.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규칙상 연봉책정은 평가 대상인 6개 대회와 최근 2년간 성적을 적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과 재난, 재해 및 주최측 사정 등으로 대회가 취소 될 경우 정상적인 평가가 어려움.
- 연봉 등급별 차이가 1천만원으로 등급 조정시 금액 변동폭이 너무 커, 선수 유치에 불리한 조항으로 작용되고 있음.
- 그 외 인사위원회, 선수영입, 현지적응훈련, 연가·휴무, 보상금, 면직 및 징계 등의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기능 신설 (안 제3조)
- 연봉 체계 및 선수등급 평가 조정 (안 제8조)
- 근무시간, 휴가, 훈련에 대한 내용 보강 (안 제17조 ~ 제19조)
- 신분보장과 면직에 대한 내용 보강 (안 제21조 ~ 제24조)
- 포상금, 성과금, 징계 등 상벌 내용 명시 (안 제26조 ~ 제29조)
- 별지 및 별표 개정(안 별표 1 ~ 10, 별지 제1호 ~ 제13호 서식)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참조: 체육진흥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내실 곳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체육진흥과(만수동, 남동구청) ☎ 453-6272, FAX 453-2159)
-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2021.5.27. 일부개정)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년 2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현행 규칙상 연봉책정은 평가 대상인 6개 대회와 최근 2년간 성적을 적용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과 재난, 재해 및 주최측 사정 등으로 대회가 취소될 경우 정상적인 평가가 어려움.
- 연봉 등급별 차이가 1천만원으로 등급 조정시 금액 변동폭이 너무 커, 선수 유치에 불리한 조항으로 작용되고 있음.
- 그 외 인사위원회, 선수영입, 현지적응훈련, 연가·휴무, 보상금, 면직 및 징계 등의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 기능 신설 (안 제3조)
- 연봉 체계 및 선수등급 평가 조정 (안 제8조)
- 근무시간, 휴가, 훈련에 대한 내용 보강 (안 제17조~제19조)
- 신분보장과 면직에 대한 내용 보강 (안 제21조~제24조)
- 포상금, 성과금, 징계 등 상벌 내용 명시 (안 제26조~제29조)
- 별지 및 별표 개정(안 별표 1~10, 별지 제1호~제13호 서식)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2021.5.27. 일부개정)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안)

(전부개정) 2023.00.00. 규칙 00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종목은 여자육상으로 한다.

② 운동경기부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단원은 8명으로 하며, 단원의 구성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한다.

제3조(체육진흥인사위원회)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단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선발(임용) 심의
2. 단원의 등급 평가 및 연봉 결정
3. 단원의 징계 수준 및 면직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제2장 임용 및 운영

제4조(임용 등) 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추천 선수에 대한 감독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4.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5. 이력서 1부
6.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지도자란 감독, 코치를 말한다)
8. 경기실적 증명서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10.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 임용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③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감독·코치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은 임용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의 관리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6조(자격) 감독·코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육상연맹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증명서 발급)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구청장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제8조(등급 조정) ① 선수의 등급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존 선수 및 신규영입 선수 등급은 최근 1년간 대회 입상 실적 중 배점이 높은 6개 대회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배점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등급 조정 시 2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연봉 책정은 별표 2와 같으며 연봉은 1년 단위로 한다.

제9조(우수선수 영입 등)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고 임용된 선수는 3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기간 내 다른 소속팀으로 이적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받은 계약금액을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이후 2년간 운동경기부에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단, 선수의 부상·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일단위로 계산해서 반환한다.

③ 구청장은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임용예정 선수에 대하여 입단 예비선수로 계약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합숙소의 설치) 선수의 기량 향상, 숙식 편의 및 합숙 훈련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의료보상) 단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단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

제12조(보수 등)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과 기타수당으로 구분하며,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연봉과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대회출전비, 훈련비, 격려금, 포상금, 성과금,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기타수당”이란 급식비를 말한다.

제13조(급여)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급여는 연봉액의 12분의 1을 등급별 연봉지급 기준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4조(급식비) 단원에게는 후생복지를 위하여 매월 450,000원의 급식비를 지급한다.

제15조(퇴직금) ①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한다.

② 퇴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퇴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이거나 그의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③ 퇴직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제16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남동구청 직장 체육인으로서 자신의 기량 향상은 물론 단원과의 화합을 통한 직장체육 향상과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복종) 단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겸직 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기타) 단원은 직무이탈금지, 비밀엄수, 집단행위금지, 청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 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유급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다만, 대체휴무는 1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별지 12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남동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을 따른다.

③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단원이 휴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사전에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훈련 등) ① 선수의 훈련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감독 책임하에 실시한다.

② 선수의 훈련은 남동구에서 지정하는 전용연습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수들의 체력보강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지훈련은 동계와 하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간 안에서 실시하되, 훈련기간은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동계훈련 : 12월 ~ 2월

2. 하계훈련 : 7월 ~ 8월

④ 선수의 대회 출전시 경기장 및 현장 적응을 위하여 전국체육대회는 10일전, 그 외 전국규모대회는 3일전에 현지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훈련비 등) ① 단원이 대회에 출전하거나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입단신청을 한 영입예정 선수에게도 전지훈련 참여에 따른 훈련비를 별표 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제대회(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를 말한다),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전 선전격려금을 별표 5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원에게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장 신분

제21조(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다.

제22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23조(직권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 현상으로 단원으로서 임무수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선수단의 해체 또는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입상실적이 없거나 운동경기부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인사위원회에 상정되어 해임 결정이 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24조(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 구청장은 즉시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근무연령) ① 단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코치는 60세

2. 선수는 35세. 다만,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할 경우 근무는 당해연도 12월까지로 한다.

제6장 상벌

제26조(포상금) ① 단원이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7조(성과금) ① 단원에게는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입상성적을 종합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 지급 점수는 별표 8 기준에 의하여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입상실적과 전국규모대회 입상실적을 합산한 점수로 8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성과금은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도자의 성과금은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지급 점수로 한다.

④ 제22조부터 제24조에 따른 면직 및 징계에 의해 해임, 정직, 감봉된 선수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경고로 구분한다.

②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신분을 유지하되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④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12개월 내에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감봉에 처한다.

제29조(징계) 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별표 9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경우
2. 제17조(근무시간)를 위반한 경우
3. 월 3회 이상 허가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경우
4. 단장 및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 감독·코치가 선수유치 및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을 하였을 경우

② 단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③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단, 제1항제7호는 5년으로 한다.

부칙<2023.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단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연봉과 우수선수 유치비에 관한 사항은 제8조와 제9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선수 등급 산정기준

구 분		등급	총 점 (100점) ①+②+③	경기실적 (60점) ①	지도자평가(30점) ②									사회공헌봉사활동 (10점) ③		
					성실성 (15점)			성장성 (10점)			팀 공헌도 (남동구 경력) (5점)					
점수배정		-	100점	60점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5년 이상	3~ 4년	2년 미만	30시간 이상	10~30 시간	10시간 미만
개 인 기 록 표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경기실적 (60점)

- 경기실적은 최근 1년간 국제 및 국내대회중에서 배점이 높은 6개 대회를 선정하여 입상점수를 합산한다.
- 재계약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된 경우 및 3년 이내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입상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5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훈련 및 대회도중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8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대회별 입상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위	2위	3위	비고
국제대회	30	25	20	* 동일대회에서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배점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단체전(2인 이상)은 80%만 인정한다
전국체육대회	20	15	10	
전국규모대회	10	8	6	

※ 국제대회 :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

※ 전국규모대회 :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

※ 대회인정 : 대한육상연맹 또는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한 대회로 단장이 승인한 대회

□ 지도자평가 (30점)

- 감독은 선수의 훈련평가를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성실성(훈련참여, 성실성, 태도) : 우수 15~11점, 보통 10~6점, 미흡 5~1점
 - 성장성(자기보완능력, 경기분석 능력의 발전도, 경기능력의 발전도) : 우수 10~8점, 보통 7~5점, 미흡 4~1점
 - 팀 공헌도(남동구청 선수경력) : 경력 5년이상 5점, 경력 3~4년 3점, 경력 2년미만 2점

□ 사회공헌봉사활동(10점) (년간 자원봉사활동 시간)

※ 1365포털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제출

- 30시간 이상 10점, 10~30시간 미만 7점, 10시간 미만 3점

□ 신규영입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실적(60%)과 지도자 평가(40%)로 산출한다.

[별표 2]

연 봉 기 준 표

1. 지도자 연봉 : 감독 5천만원, 코치 4천만원

2. 선수연봉

(단위: 점, 천원)

선수 연봉액 기준표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배점	90이상	89~85	84~80	79~76	75~71	70~66	65이하
연봉액	60,000	55,000	50,000	45,000	40,000	36,000	32,000

○ 각 등급별 연봉액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육진흥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
- 한국 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별표 3]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단위: 천원)

급수	영입비 지급기준	지급액
1급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 세계 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아시아선수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한국신기록 및 부별 한국신기록 수립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국가대표 선수인 사람	40,000
2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 국가대표상비군인 사람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 1회 이상 1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1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한국 신기록 수립자	30,000
3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1회 이상 1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 1회 이상 2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2회 이상 2위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대회신기록 수립자	20,000
4급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경력자 ○ 전년도 또는 현년도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경력자	10,000

※ 선수의 개인기록에 한함 (단체기록 인정불가)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진흥인사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정 (증,감)할 수 있음

[별표 4]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

(단위: 원/일)

구분	일비	식비	간식비 및 목욕비	숙박비	비고
금액	20,000	30,000	20,000	실비 (상한액 50,000)	

※ 국제대회 출전시 항공운임료와 초과수하물비용은 실비로 지급하며, 통역비는 12만원 내에서 실비 지급한다.

[별표 5]

대회출전 선전격려금

구분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규모대회	비고
금액	선수당 300,000원	팀당 500,000원	팀당 200,000원	

[별표 6]

피복비 및 장비 지급기준(연간)

구분	운동복	유니폼	땀복	파카	운동화	경기용 신발	가방	T셔츠	기타
지급량	3회	2회	2회	1회	3회	2회	1회	4회	필요시

[별표 7]

포상금 지급기준

1. 개인경기 실적 포상금

(단위: 천원)

구 분	1위(금)	2위(은)	3위(동)	비고
올림픽대회	3,000	2,000	1,000	
세계선수권대회	2,000	1,500	1,000	
아시아대회 등*	1,000	800	500	
전국체육대회	500	300	200	
전국단위대회	300	200	100	

※ ‘아시아대회 등’이란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이에 준하는 국제대회를 말한다.

2. 단체경기 실적 포상금

(단위: 천원)

구 분	1위(금)	2위(은)	3위(동)	비고
전국체육대회	300×명	200×명	100×명	
전국단위대회	200×명	150×명	70×명	

3. 기록갱신 포상금 (선수만 해당)

(단위: 천원)

구 분		지급액	비고
세계신기록(타이기록)		1,500	
한국신기록(타이기록)		800	
대회신기록 (타이기록)	전국체육대회	500	
	전국규모대회	300	

※ 지도자(감독, 코치)는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기록갱신 제외).

[별표 8]

성과금지급 점수 산정기준

구 분	1위	2위	3위
올 림 픽 게 임	1,000점	600점	400점
세 계 선 수 권 대 회	600점	400점	300점
아 시 안 게 임	400점	300점	200점
아 시 아 선 수 권 대 회	300점	200점	120점
전 국 체 육 대 회	200점	120점	80점
전 국 규 모 대 회	15점	10점	6점

※ 성과금은 전국체육대회 이상 입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입상 실적과 전국규모대회 입상 실적을 합산하여 8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함.

※ 감독 및 코치는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점수로 지급한다.

[별표 9]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남동구청	직위	
		한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주소						
징계사유	징계사유 작성 및 확인서 첨부						
징계의결 요구권자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체육진흥과장 ○ ○ ○ (서명 또는 인) 체육진흥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확 인 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현재) 남동구청	(현재)	(한글) (한자)
비위유형	① 제16조(단원의 의무) 위반 및 훈련 태만 (☐ 해당됨, ☐ 해당없음)		
	② 제17조(근무시간) 위반 (☐ 해당됨, ☐ 해당 없음)		
	③ 월 3회 이상 허가없이 훈련 불참 (☐ 해당됨, ☐ 해당 없음)		
	④ 단장,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 해당됨, ☐ 해당 없음)		
	⑤ 감독, 코치가 선수 유치 및 지도관리 업무를 부적정 처리 (☐ 해당됨, ☐ 해당 없음)		
	⑥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선수자격 박탈 및 정지 (☐ 해당됨, ☐ 해당 없음)		
	⑦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 해당됨, ☐ 해당 없음)		
기 타	* 정상 참작사유 기재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반자 (서명 또는 날인)			

[별표 10]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 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규칙 제16조 위반 및 훈련 태만	해임	정직	감봉	경고
규칙 제17조 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경고
월 3회 이상 허가없이 훈련 불참	해임	정직	감봉	경고
단장,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	해임	정직	감봉	경고
감독, 코치가 선수 유치 및 지도관리 업무를 부적정 처리	해임	정직	감봉	경고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선수자격 박탈, 정지	해임	-	-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	해임	정직	감봉	-

[별지 제1호 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성 별	
	(한자)	생년월일	
주 소	(☎)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과 년) 졸업·재학		
경 력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근무처 :		
주 요 경기실적			

남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추천서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위 사람은 우수한 자질을 갖춘 자로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여자육상)
(감독, 코치, 선수)로 추천합니다.

()육상경기연맹 회장 _____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감 독 의 견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 종 목		최고기록	
선 수 소 개	※ 선수기록, 건강상태, 성격 등 선수의 장·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감 독 의 견	※ 선수의 장래성, 팀 기여도 등에 대한 진솔한 의견 기술			

이와 같은 사유로 상기 선수를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감 독 :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단원으로서의 공지를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임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규칙 제16조(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할 때
2.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규칙 제17조(근무시간)를 위반했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장 및 감독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5. 감독·코치가 선수유치와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때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하였을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임 용 장

직 위 :

성 명 :

위 사람을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여자육상) (감독, 코치, 선수)으로
임용함.

20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임용계약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단원 ○○○(이하 “을”이라 한다)은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단원으로 아래와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1. 계약당사자 남동구청장을 “갑”으로 단원 ○○○을 “을”로 하고, 을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연락처
주소		최초계약일	비고

2. 을의 직위는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선수)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년간).
2. 을은 계약기간 내에는 갑의 이적 동의없이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없다.

제3조(계약금) 계약금(우수선수영입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계약금은 ○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금의 2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이후 2년간 남동구청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일단위로 계산해서 반환한다.

제4조(보수)

1. 계약금은 금 원(금 원)으로 한다.

2. 연봉은 금 원(금 원)으로 한다.
3. 연봉에는 기본급여,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을 포함한다.
4. 연봉은 1년단위로 계약하며,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급여를 매월 지급한다.
5. 기타수당으로 급식비를 매월 지급한다.

제5조(급여)

1. 급여는 매월 20일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급여 지급 시 결근 일수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3. 기타 급여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 규정을 따른다.

제6조(보험급여 및 퇴직금)

1.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되, 을의 부담금은 을의 급여에서 공제한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기타수당, 훈련비 등)

1. 기타수당(급식비)은 매월 1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근무일에 지급한다.
2.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격려금, 피복비, 포상금, 성과금 등은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훈련) 단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9조 규정을 따른다.

제9조(근무일과 휴일)

1. 근무는 주 5일 근무로 하고,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2. 공휴일(토·일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거나 특별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휴무의 예외로 한다.
3. 갑은 공휴일 외에도 법정공휴일에 을이 휴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단원의 의무) 을은 규칙 제16조 각 호에서 규정한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기간 중에 계약 해지)

1. 규칙 제22조부터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갑의 지휘명령권 위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체육지도자로서 품위를 손상할 경우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경우
5. 성적이 부진하거나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7.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의 운영 실적이 부진하여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자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갑은 을이 위 각 호에 해당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을이 본인의 신상관계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갑에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을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계약의 조건)

1.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에 준하여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시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3. 을은 규칙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을은 부단한 노력과 지도로 남동구청의 명예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본 계약의 체결로 기존의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〇〇년 월 일

“갑” 남 동 구 청 장 (인)

“을” ○ ○ ○ (인)

[별지 제7호 서식]

인 사 기 록 부

〈 앞 면 〉

종목			성명	(한자)					
사 진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병역사항		복 무 (개월) / 미 필 () / 해당없음()						
	신체사항	신장	체중	시력	색맹	취미	특기		
		cm	kg	좌- 우-					
학 력	기간	학교명	전공(학위)		기간	학교명	전공(학위)		
임용사 항	임용년월일		직위		퇴직년월일		직위		
경 력	년월일	연봉	근무기간		년월일	연봉	근무기간		

〈 뒷 면 〉

임 용 전 경 기 실 적	기 간	대 회 명	장 소	전 적
임 용 후 경 기 실 적	기 간	대 회 명	장 소	전 적

[별지 제8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재직사항	소속			
	직명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용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재직사항	소속			
	직명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인)				

퇴직금청구서

[별지 제11호 서식]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

[illegible]

[별지 제12호 서식]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훈련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결 재	감독 (작성자)	담당자	담당

훈련인원	구분	계	감독	코치	선수	훈련참가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훈련									
	불참									
	불참사유	선수총입소(명), 연가(명), 병가(명), 기타(명)								
훈련장소										
훈련내용	오전									
	오후									
훈련평가					특기사항					

[별지 제13호 서식]

근무상황부

[소속 :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직 : 성명 :

]

[illegible]

[참고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지원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 (개정 2019. 6. 28.)
2.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3.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現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9.11.)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남동구청 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종목은 여자육상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운동경기부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총원은 8명으로 한다. 이 경우, 운동경기부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5.27.)

제3조(임용)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감독·코치 및 선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감독·코치는「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육상연맹소속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1.5.27.)

② 감독·코치 및 선수의 임용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감독, 코치 : 별지 제1호서식, 선수 :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

2. 이력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6. 서약서 1부 (별지 제12호서식) (일부개정 2021.5.27.)

7. 지원 또는 추천 선수에 대한 감독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일부개정 2021.5.27.))

③ 우수한 선수(전국규모대회 이상 3위 이내 입상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졸업예정자를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임용 전까지 별표 1의 선수 4급에 해당하는 연봉 월액을 훈련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7. 10.)

④ 임용된 감독·코치 및 선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임용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5.27.)

⑤ 감독·코치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⑥ 감독·코치의 재임용은 임용기간 만료 3월 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선수를 최초 임용하는 경우에,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복무기간 만료 후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10. 11.)

⑧ 삭제 (2021.5.27.)

제4조(정년) 감독·코치 및 선수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5.27.)

1. 감독·코치 : 60세 (일부개정 2021.5.27.)

2. 선수 : 35세 (다만, 선수의 기량이 우수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휘감독) ① 운동경기부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에 두고 감독·코치 및 선수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감독은 선수발굴, 육성 및 지도·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복무) ① 감독·코치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 및 종무시간은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5. 7. 10.)

②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7. 10.)

③ 감독·코치 및 선수는 연간 20일의 범위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가 및 경조사휴가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2020.9.11., 2021.5.27.)

④ 감독·코치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월 이내

⑤ 감독·코치 및 선수가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11.)

⑥ 감독·코치 및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 기재하여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9.11., 2021.5.27.)

⑦ 운동경기부 관리와 관련하여 단장은 감독, 코치, 선수 등에게 건강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훈련) ① 선수의 훈련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감독 책임하에 실시한다.

② 선수의 훈련은 구에서 지정하는 전용연습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수들의 체력보강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지훈련은 동계 및 하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간 안에서 실시하되, 훈련기간은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동계훈련 : 12월 ~ 2월

2. 하계훈련 : 7월 ~ 8월

④ 감독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5.27.)

제8조(면직) ① 구청장은 감독·코치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감독·코치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3. 감독·코치가 선수유치 및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4. 각종 경기를 통하여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그 향상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5. 지정된 숙소에서 무단이탈 하였을 때

6.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7.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지휘 감독자의 명에 불응하였을 때

9. 감독·코치는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서 3년간 1회 이상을 3위 이내에 입상하지 못하거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대회에서 4년간 1회 이상을 3위 이내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때 (일부개정 2021.5.27.)

10.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또는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간 1회 이상을 3위 이내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때

11. 삭제 (2021.5.27.)

② 제1항에 따라 면직된 때에는 1년 이내에 다른 팀으로의 입단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감독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급한다.

제9조(합숙소 설치 운영) ① 선수의 합숙훈련 및 숙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삭제 (2021.5.27.)

제10조(보수 등) ① 감독·코치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연봉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5. 7. 10., 2021.5.27.)

1. 연봉은 1년 단위로 한다. (전부개정 2015. 7. 10.)

2. 감독·코치 및 선수의 연봉은 최근 2년간의 각종 대회 경기성적 등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결정한다. (전부개정 2015. 7. 10.)

3. 감독·코치 및 선수의 연봉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 7. 10., 2021.5.27.)

② 월 보수는 연봉액의 12분의 1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 7. 10.)

③ (삭제 2015. 7. 10.)

제11조(삭제 2015. 7. 10.)

제12조(급식비) 감독·코치 및 선수에게 후생복지를 위하여 매월 450,000원 급식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5. 7. 10.)

제13조(실비보상) ① 감독·코치 및 선수가 훈련, 출전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지훈련비는 연간 60일 범위에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9.11.)

②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감독은 5급 공무원, 코치 및 선수는 7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 및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삭제 2015. 7. 10.)

제14조(보상금) ① 감독·코치 및 선수가 별표 4에서 정하는 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선전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출전 선전장려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21.5.27.)

② 감독·코치 및 선수가 별표 4의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20.9.11., 2021.5.27.)

③ 감독·코치 및 선수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하여 구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기존 제6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1.5.27.]

④ 입상보상금과 특별보상금, 기록갱신보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독·코치의 입상보상금과 특별보상금은 해당 종목별 최고성적 1개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기존 제7항에서 이동, 전부개정 2021.5.27.]

⑤ 감독·코치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에 출전한 연간 입상성적을 종합하여 성과금을 지급한다. [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1.5.27.]

⑥ 성과금 지급을 위하여 선수별로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성과금 지급 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감독·코치의 성과금 지급점수는 해당부 선수의 가장 높은 성과금 지급점수로 하되 제8조에 따라 면직된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성과금 지급점수에서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다.

[기존 제4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1.5.27.]

⑦ 성과금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성적이 있는 성과금 지급점수 80점 이상 획득자에게 지급하며, 점수당 1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기존 제5항에서 이동 2021.5.27.]

제15조(우수선수 유치비)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11.)

②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일부개정 2021.5.27.)

③ 우수선수 유치비는 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선수에게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우수선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입단지원서를 제출한 예정자를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임용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11.)

④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받고 임용된 선수는 3년 이상 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고, 의무복무 기간에 제8조에 따라 면직 될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경기 중 사고로 인하여 근무가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수선수 유치비 반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 10. 11., 2021.5.27.)

제16조(의료보상) ① 감독·코치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11.)

②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감독·코치 및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감독·코치 및 선수에게 각종대회 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피복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일부개정 2020.9.11., 2021.5.27.)

제18조(퇴직금) ① 운동경기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에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5.27.)

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금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1.5.27.)

③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퇴직금 지급청구서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5.27.)

제19조(경력증명서 발급) 단장은 감독·코치 및 선수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5.27.)

부 칙 (1997. 12. 30. 규칙 제43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복무규정,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00. 2. 19. 규칙 제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26. 규칙 제5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5. 11. 규칙 제5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1. 규칙 제5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임용기간 설정 등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일 현재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12. 19.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6. 25. 규칙 제6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급적용) 별표 9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05. 11. 4.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 및 [별표 4]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코치는 제외한다.

부 칙 (2006. 12. 28. 규칙 제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별표 1]은 2007. 1. 1.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9. 28. 규칙 제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9. 규칙 제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2008. 1. 1.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10. 23. 규칙 제7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2. 31.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4. 22.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22.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27.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11. 규칙 제8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등 적용례) 제3조제7항 및 제15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의 공포 당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선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893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공포 당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선수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개정규칙을 제외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9.11. 제1037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61호, 202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22호

도 로 명 주 소 고 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17.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10 (만수동) 외 3건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1, 7, 7-7, 7-8, 7-14, 7-15, 13-2, 13-5, 13-6, 13-7, 13-33, 13-49, 13-50, 13-51, 14-1, 14-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10 (수산동)	2009.7.10.	지역명칭 인용	2023.2.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로 610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10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6-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305 (논현동)	2009.11.16.	남동대로의 동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23.2.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동로 30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05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9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6번길 76 (장수동)	2009.11.16.	장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2.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자로6번길 7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6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9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6번길 72 (장수동)	2009.11.16.	장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3.2.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자로6번길 7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2를 건물번호로 부여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23호

통·반 구역조정 결정고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23. 2. 21.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첨부문서 참조”

2023. 2. 21.
남 동 구 청 장

[첨부]

-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위한 -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계획

- ❖ 구월1동 구월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아파트 1,109세대 입주 예정에 따른 통·반 신설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통은 2~8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2(통·반의 개편)

동장은 전출·입 등 변동사항에 따른 통·반의 세대수가 통·반의 획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정기준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통·반 획정 기준 적용
 - 반 :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통 : 2~8개 반으로 구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 가능

3

조정사유

- 구월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 입주세대 : 총 1,109세대(영구임대 355세대 / 일반임대 754세대)
 - 입주일정 : 2023. 2. 24.(금) ~ 90일간
 - ※ 입주 전 통·반 신설을 통한 전입사후확인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 대비
 - ※ 신규입주민에 대한 동정 및 지역사회 정보전달 등 전입 주민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신규 통장 위촉 필요
- 합리적인 통·반 구획 재조정을 통한 행정효율 강화
 -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일부 통 내 과다 또는 과소세대 반 등을 적정세대로 재조정
 - ※ 3통 4반 : 기존에 있던 현대빌라(구월동 1215-1)의 재건축으로 현재 상가건물(가나프라자)에 1세대가 입주해 있음

4

조정내역

- 총괄내역

구 분	조 정 전		증 감		조 정 후	
	통	반	통	반	통	반
남동구	882	3,771	+3	+11	885	3,782
구월1동	48	189	+3	+11	51	200

- 49통(4개반), 50통(4개반), 51통(4개반) 신설 / 3통 1개반 감소
- 조정 세부내역
 - 3통(5개반 → 4개반) : 1개반 감소
 - ※ 3통 4반을 3반으로 편입, 3통 5반은 4반으로 조정

조정 전				조정 후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3통	소 계		167	34통	소 계		167
	1반	1215-8, 10, 11, 15, 16, 17, 42	28		1반	1215-8, 10, 11, 15, 16, 17, 42	28
	2반	1215-7, 18, 45, 47, 48, 49	42		2반	1215-7, 18, 45, 47, 48, 49	42
	3반	1215-30, 31, 33, 36, 37, 38, 39	51		3반	1215-1, 3, 5, 30, 31, 33, 35, 36, 37, 38, 39	52
	4반	1215-1, 3, 5, 35	1		4반	1215-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45
	5반	1215-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45				

- 49통(4개반) : 1개통 4개반 증가

※ 선수촌7단지 아파트 701동, 706동 총 349세대에 1개통 신설

조정 전				조정 후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신설			49통	소 계			349
				1반	선수촌로 7, 701동 1호~5호		94
				2반	선수촌로 7, 701동 6호~7호 선수촌로 7, 706동 1호~2호		88
				3반	선수촌로 7, 706동 3호~5호		83
				4반	선수촌로 7, 706동 6호~8호		84

- 50통(4개반) : 1개통 4개반 증가

※ 선수촌7단지 아파트 702동, 703동 총 364세대에 1개통 신설

조정 전				조정 후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신설			50통	소 계			364
				1반	선수촌로 7, 702동 1호~6호		102
				2반	선수촌로 7, 702동 7호~8호 선수촌로 7, 703동 1호~2호		90
				3반	선수촌로 7, 703동 3호~5호		87
				4반	선수촌로 7, 703동 6호~8호		85

- 51통(4개반) : 1개통 4개반 증가

※ 선수촌7단지 아파트 704동, 705동 총 396세대에 1개통 신설

조정 전				조정 후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신설				51통	소 계		396
					1반	선수촌로 7, 704동 1호~4호	82
					2반	선수촌로 7, 704동 5호~8호	82
					3반	선수촌로 7, 705동 1호~4호	116
					4반	선수촌로 7, 705동 5호~8호	116

통·반구역 조정현황

▷ 승인 일자 : 2023. 2. 21.

구분 동명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882	3,771	3	11	885	3,782	
구월1동	48	189	3	11	51	200	
구월2동	49	211	0	0	49	211	
구월3동	62	220	0	0	62	220	
구월4동	36	171	0	0	36	171	
간석1동	42	194	0	0	42	194	
간석2동	35	155	0	0	35	155	
간석3동	54	217	0	0	54	217	
간석4동	46	215	0	0	46	215	
만수1동	44	176	0	0	44	176	
만수2동	42	157	0	0	42	157	
만수3동	39	132	0	0	39	132	
만수4동	43	211	0	0	43	211	
만수5동	33	184	0	0	33	184	
만수6동	41	185	0	0	41	185	
장수서창동	32	121	0	0	32	121	
서창2동	53	183	0	0	53	183	
남촌도림동	44	193	0	0	44	193	
논현1동	46	248	0	0	46	248	
논현2동	48	219	0	0	48	219	
논현고잔동	45	190	0	0	45	190	